



**업종에 관계없이**  
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!

**일자리 안정자금이란?**

- ▶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**지원대상**

- ▶ **30인 미만 고용 사업주**
  - ▶ 공동주택 경비 ·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
- ▶ **최저임금 준수 조건**
  - ▶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 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
- ▶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- ▶ **정규직 · 계약직 · 일용직 ·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**
  - ▶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)은 지원제외
- ▶ **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**
  - ▶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등)



**1회 신청으로**  
1년 내내 일어서 드립니다!

**지원금액**

- ▶ **노동자 1인당 월13만원**
  - ▶ 월중 일 ·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- ▶ **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**

**지급방식**

- ▶ **연중 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**
  - ▶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
- ▶ **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**
- ▶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



**집, 일터에서 바로**  
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!

**신청서 접수**

- ▶ **온라인**
  - ▶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
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)
- ▶ **방문 · 우편 · 팩스 (3,940개소)**
  - ▶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
**명칭 (운영기관)**

**사이트 주소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(국민연금공단)      | www.a insure.or.kr  |
| 고용 ·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근로복지공단) | total.keomwel.or.kr |
| 국민건강보험 EDI (국민건강보험공단)    | edi.nhis.or.kr      |
| 국민연금 EDI (국민연금공단)        | minwon.nps.or.kr    |
| 고용보험 EDI (한국고용정보원)       | www.ei.go.kr        |

**문의 · 상담**

☎ 근로복지공단 15388-0075 ☎ 고용센터 1350

